

[붙임]

신입직 필기전형 가점기준(과락점수시 미적용)

□ 법정 및 사회형평적 가점

평가항목	우대가점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가점 부여(만점의 10% 또는 5%) (단,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: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. 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) ○ 「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(10%) ○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(5%)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) (5%) ○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(공고마감일 기준)인자(5%)

* 전형별 만점기준

* 2가지 이상 해당시 중복 적용

□ 일반가점

평가항목	우대가점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(2%) ○ 우리공사 체험형인턴 수료자(5%) ※ 근무성적이 “우” 이상인자에 한함
지역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민등록상 해당 근무지 거주자(공고일 전일 기준) (10%)
공사 재직자 (6급2 기계·전기·전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리 공사 특정직,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(10%) ※ 근무성적이 “우” 이상인자에 한함, 단,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 수습평정 성적으로 함

* 필기전형 만점기준

* 2가지 이상 해당시 중복 적용